

#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실시 공고
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, 시행규칙 제106조,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11호에 따라 「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」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평가대상기관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

※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 제외

※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'19년도 하반기에 시범평가 실시

2. 평가자 :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

3. 평가대상기간 : 2017.5.1~2018.12.31까지 수행한 업무

4. 평가방법 : 기관별 방문평가

5. 평가표 : 붙임 참조

※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은 설명회('19. 2. 14) 때 안내

6. 평가일정

-평가실시 : 2019.2.25 ~ 9월 말

※ 기관평가 방문일은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, 안전보건공단 직원과 외부 전문가 평가일이 다를 수 있음

-평가결과(절대점수) 통보 : 2019. 10월중

-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: 2019. 11월중

※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

-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: 2019.12월~2020.1월

7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(052-7030-652, 654)에게 문의

2019년 1월 25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